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 소 속 청 장 지 휘 에
관 한 규 칙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지휘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업무 중 중요정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지휘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정책수립과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정책, 국제협력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통계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2조).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요구서 및 예비비사용요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제4조).

다. 질병관리청장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질의를 하는 경우 회신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감염병 관계법령 해석의 통일성, 법집행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함(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 기정 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하에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①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 등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국제협력·협정체결의 추진
3.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수립 및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2. 국무회의에 부칠 사항
3.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4.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 ·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 · 국무총리 및 국회 ·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3. 소속기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4. 각종 질병 관리 관련 통계·분석자료 등 장관이 중요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5. 감염병 예방 · 관리 등 각종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6.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7. 사회적으로 중요한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제3조(인사) ①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전보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특별채용 · 특별승진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제4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제5조(감사)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해당 사안의 긴급성·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거나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와 관련하여 질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보건정책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첨단의료지원관이 총괄한다.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장관은 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질병관리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또는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